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시기 내년 7월 1일로 늦춰야...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도축마리수 8만마리 이상 닭·오리 도축장에 대해 포장유통 의무화가 시행된다.

또한 2008년부터는 닭·오리 관련 모든 도축업뿐 아니라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에도 포장유통의무화가 적용된다.

농림부는 지난 6월 15일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의무화, 가축사육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축산물 위해평가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포장·유통 의무 대상 축산물은 우선 유통과정에서 비교적 변질되기 쉬운 닭·오리고기로 하고, 포장대상 영업자는 닭·오리 관련 도축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로 규정했다.

시행시기는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 1월 도축마리수 8만마리 이상 도축장에 2007년 1월 1일부터 우선 의무 적용토록 하고 전체적인 시행은 2008년 1월 1일부터다.

닭·오리고기에 대한 포장유통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과태

료를 부과기로 했다.

이밖에도 가축사육단계 HACCP의 적용 대상·기준 및 절차·방법 등도 마련하고, HACCP 담당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는 등 HACCP 담당기관의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법 하위 법령 정비로서 농림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가공·보관·운반 및 판매 등 축산물 생산·유통 전 과정에 걸친 위생관리가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개정안에 명시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와 관련 초기 시행의 문제점과 아울러 포장방법 및 단위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바 본회는 지난 6월 27일 본회 회의실에서 회원사 담당 책임자 모임을 갖고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집약해 농림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본고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중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와 관련한 내용중 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시행시기 → 2007년 7월 1일로 개정

이번에 입법예고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2조(축산물의 포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도 일일 평균 도축두수가 8만수 이상인 도축장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의거해 도계수수가 8만수 이상의 도계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본회 회원사들은 조기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단 개별포장(벌크단위 및 소매단위 포장)을 위한 신규 또는 증설 시설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시설 결정 후 발주시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두 번째, 도계장에서 출하되는 물량 중 상당수가 소매점이나 소매점에 납품하는 중간업체(대리점)에 공급되고 있으나 포장유통 의무화를 인식시키는데 시간이 촉박하다(원가상승 요인 등을 홍보).

세 번째, 현재 벌크상태로 납품받아 소매점

등에 공급하는 '2차점'의 경우가 많은데 이때 소량 다수포장하는데 따른 포장원가 상승으로 인한 1차점의 거래처 이탈로 1차 시행 업체의 판매망에 혼란이 우려된다.

이에 본회는 위와 같은 사유로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를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2. 축산물의 포장방법

1) '용기' → '용기' 또는 '포장재'

이번에 입법예고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별표 2의2] 축산물의 포장방법에 따르면,

"1. 포장이라 함은 포장대상 축산물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봉인하거나 개별적으로 진공 포장한 것으로서 외부에 합격검인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의한 표기가 된 축산물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위의 내용 중 "...축산물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에서 포장재(진공포장재 등)는 '용기'라 할 수 없으므로 확대 명시가 필요하다. 검역원 고시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도 용기·포장으로 구분 표시되어 있다.

이에 본회는 "...축산물을 용기 또는 포장재에 담아 포장한 후..."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2) 개별포장 중 벌크 단위, 소매포장 단위 변경

이번에 입법예고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별표 2의2] 축산물의 포장방법 '2. 닭고기, 오리고기에 대한 포장방법 및 유통방법' '가항'에 따르면,

“가. 닭, 오리 도축장 외부로 반출하는 닭고기, 오리고기 지육은 개별 포장한 후 외부에 합격검인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별도 3)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개별포장은 10~15마리 미만의 벌크 단위와 한 마리 또는 2~4마리까지의 소매단위 포장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현재 국내 닭고기 시장에서 삼계의 경우 20~25마리 단위로 포장되어 유통되고 있고, 또 삼계는 냉동비축이 많아 10~15마리 미만으로 포장할 경우 박스가 많아져 원가상승이 발생하며, 또한 작업시간도 지연된다.

이에 본회는 개별포장 중 벌크단위를 '10~15마리 미만'에서 '10~25마리 이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소매포장 단위의 경우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단위가 5마리인 경우가 많음에 따라 소매포장 단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예로 소비자가 닭고기를 5마리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개정안에 의거해 2~4마리 포장된다면 이 소비자는 4마리 포장된 것과 1마리 포장

된 닭을 구매해야 한다.

이는 부피가 많아져 불편하고, 또한 한 개의 포장이면 될 것을 나누어 포장해야 하므로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에 본회는 소매포장 단위를 '한 마리 또는 2~4마리'에서 '한 마리 또는 2~5마리'까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3) 부분육 포장단위 변경

이번에 입법예고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별표 2의2] 축산물의 포장방법 '2. 닭고기, 오리고기에 대한 포장방법 및 유통방법' '나항'에 따르면,

“나. 닭, 오리 도축장에서 부위별로 분할하여 포장하는 경우도 외부에 합격검인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별도 3)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의 부분육은 포장단위가 10kg 이하로 포장한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현행 부분육의 경우 20kg 이하로 유통되는 것이 많으며, 또 냉동 유통 또는 비축시 BOX 수량 증가 등 원가상승요인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회는 부분육 포장단위를 10kg 이하에서 20kg 이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